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
회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611호(2018.9.19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란을 신설하는
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
정예고 하였습니다.

3.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, 2018.9.21.(금)까지 본회 보험국(E-mail :
yjkim@kha.or.kr, Fax : 02-705-9259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(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)
- 혈액투석 정액수가(제7조제2항)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
요령에 규정(안 별표1)

붙임 :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부.

※ 붙임자료 다운로드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정책국 공지사항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김영진 팀장 이경철 국장 류향수 본부장 김종윤 사무총장 김승열

시 행 : 보험 제 2018-556 (2018.09.21)

우편번호 04165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8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jkim@kha.or.kr